

■ 2025년 전문자료집 ■

부 모 교 육



남양주장애인종합복지관

■ 2025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목 차 ☐

1. 권익지원팀

- 25-01 장애인 사법절차지원 보호자 교육 5
- 25-02 발달재활서비스 보호자 교육 9

2. 늘푸른동산

- 25-03 2025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17
- 25-04 발달장애인 개인별 예산제 23

3. 열린일터

- 25-05 2025년 열린일터 사업 및 운영지침 교육 29
- 25-06 2026년 장애인복지 정책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47

(발달)장애인 사법절차지원 보호자 교육



팀 명	권익지원팀
일 시	2025.03.26.(수) / 16:00~18:00
장 소	3층 강당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사법절차지원 보호자교육

1. 형사절차의 이해

1) 범죄 성립 조건과 책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책임능력 판단(심신장애 여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처벌 대상이 아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음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 감경 가능

청각·언어장애인은 감경 사유

형사책임 판단 시 개인의 인지 수준, 의사결정 능력, 사건 당시 상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2) 수사 절차 개관

형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수사개시 → 체포/불구속 →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형 집행

[주요 용어 정리]

- 피의자: 수사를 받는 단계
- 피고인: 기소 후 재판을 받는 단계
- 체포(영장·긴급·현행범)
- 구속(영장 발부 후 신체 자유 제한)
- 불송치, 불기소
- 정식기소, 약식기소
- 특히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3) 피의자 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 권리가 보장된다.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영상녹화 동의 여부 선택권

발달장애인 조사 시 실무상 유의사항:

진술은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기재

신뢰관계인의 진술과 피의자 진술 구분

휴식 요청 가능

불공정 수사 시 이의제기 가능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2. 피의자가 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1) 수사 전 준비사항

혐의사실 파악(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능)

사실관계 정리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

법률 검토 및 변호인 선임 여부 결정

유리한 자료 확보

조사 일정 조율 및 요청사항 사전 협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요청, 진술녹화 요청 등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2) 체포된 경우 대응

확인사항 : 체포 유형, 체포 사유, 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 선임, 신뢰관계인 동석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며,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다.

3) 합의의 중요성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가 중요하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판 단계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단,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직접 접촉은 지양해야 하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협의한다.

4) 판결 이후 절차

상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 및 상고 가능

부수처분 이행 필요(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장애인의 경우 벌금 분할납부 신청 가능

3.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지원

1) 발달장애인 학대 현황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피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수치로,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 사건 인지 및 고소 준비

사실관계 확인(진술 오염 주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소 등 지원기관 연계

증거 확보

법률 상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 가능

3) 수사 단계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신변보호 요청

조서 확인 지원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작성 지원

피해자 의사 존중

불송치·불기소 결정 시 대응 가능: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항고(30일 이내)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4) 공판 단계 지원

소송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의견진술

비공개 재판 신청

증인보호제도 활용(영상증언, 차폐시설 등)

배상명령 신청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양형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4. 시사점 및 실무적 함의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에서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다.

진술 보호와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합의 전략은 사건 유형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기관 차원의 사전 매뉴얼 정비가 요구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보호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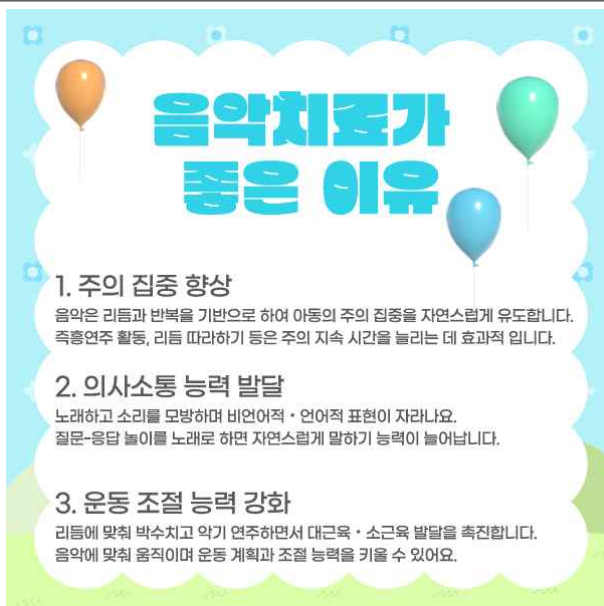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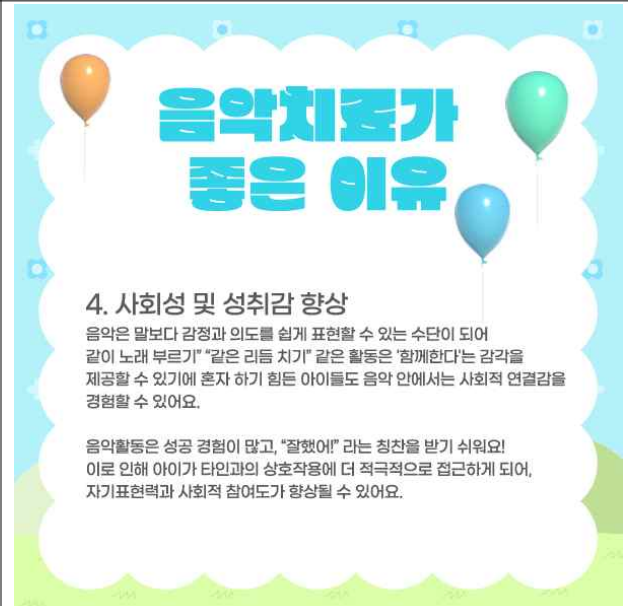
팀 명	권익지원팀
일 시	2025.05.19. (월)~05.23.(금)
장 소	서면 또는 온라인전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 보호자교육

1.음악심리지원 보호자교육 자료

 2025 음악치료 부모교육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집에서 즐기는 음악놀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음악치료	 음악치료란 무엇인가요? 음악을 활용해 아동의 언어, 운동, 인지, 사회성 발달을 돕는 치료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에게 흥미롭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음악치료가 좋은 이유 주의 집중 향상 음악은 리듬과 반복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의 주의 집중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즉흥연주 활동, 리듬 따라하기 등은 주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발달 노래하고 소리를 모방하며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이 자라나요. 질문-응답 놀이를 노래로 하면 자연스럽게 말하기 능력이 늘어납니다. 운동 조절 능력 강화 리듬에 맞춰 박수치고 악기 연주하면서 대근육·소근육 발달을 촉진합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운동 계획과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음악치료가 좋은 이유 사회성 및 성취감 향상 음악은 말보다 감정과 의도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같이 노래 부르기 "같은 리듬 치기" 같은 활동은 '함께한다'는 감각을 제공할 수 있기에 혼자 하기 힘든 아이들도 음악 안에서는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음악활동은 성공 경험이 많고, "잘했어"라는 칭찬을 받기 쉬워요! 이로 인해 아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자기표현력과 사회적 참여도가 향상될 수 있어요.

주인공음악 & 모방 능력 강화 리듬 따라하기

1. "준비~" 하고 손을 번쩍 든 다음, 부모가 먼저 리듬을 두드려줍니다.
(손뼉을 쳐도 좋고 책상이나 집에 있는 악기/도구 등 다 가능해요!)
2. 처음은 한 번 박수 → 그다음 두 번 박수 → 점점 패턴을 늘려갑니다.
3. 아이가 따라하면 웃으며 칭찬! 따라하지 못해도 "다시 해보자~" 격려!

Tip: "시작 전 손 번쩍! '준비~'"



추천 리듬: 짹-짝
 짝짝-짝짝
 짝-짝-짝 (삼박자 느낌)

활동 추천 노래

- 곰 세 마리
(간단한 반복구가 많아 박수 치기 좋아요)
- 아빠 힘내세요
(박자 따라 치기 + 음원 리듬)
-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손뼉 쳐요 clap clap~ → 모방하기에 최고)

인사소문 & 상호작용 촉진 노래로 대화하기

1. 짧은 문장을 노래처럼 불러요
(“물 마시자~”, “밥먹자~”, “손 씻자~”)
2. 질문도 노래로!
(“뭐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대답 없어도 눈빛 · 웃음 반응만으로도 좋아요! OK

활동 추천 노래

-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짧은 멜로디로 질문하기 좋음)
- 두껍아 두껍아 현 집 줄게 새 집 다오 (느리고 반복적인 멜로디 = 대화 연습용)
- ABC Song (멜로디 간단, 발음 연습용)
- Baby Shark (아기상어) (짧은 문장 + 반복 = 대화 톤 만들기 용이)

Tip: 짧고 쉬운 멜로디 (도레미, 도미솔 등) / 대답 기다릴 때 5초 이상 멈추주기

신체 조절 능력 & 감정 표현 몸으로 느끼는 음악



빠른 음악 → 팔 흔들기

느린 음악 → 천천히 걷기

Tip: 동작이나 신호를 바꾸면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해요!

1. 빠른 음악이 나오면 “빠르게~” 신호하고, 같이 팔을 흔들거나 뛰기
2. 느린 음악이 나오면 “천천히~” 신호하고, 손을 천천히 흔들거나 걷기

*부모가 먼저 크게 움직이며 모델링 해주면 아이가 따라하기 쉬워요!

활동 추천 음악

빠른 음악: 상어 가족, 호키포키, 터키행진곡

느린 음악: 자장가, 작은별, 캐논 변주곡 (편안한 클래식 버전)

보너스 활동! 소리 순바퀴질

‘소리 나는 방향 찾기 놀이’

핸드폰으로 짧은 음악을 틀고, 방 구석구석에 숨겨 놓아요.

“어디서 소리 나지?” 하며 아이가 소리 방향을 찾아가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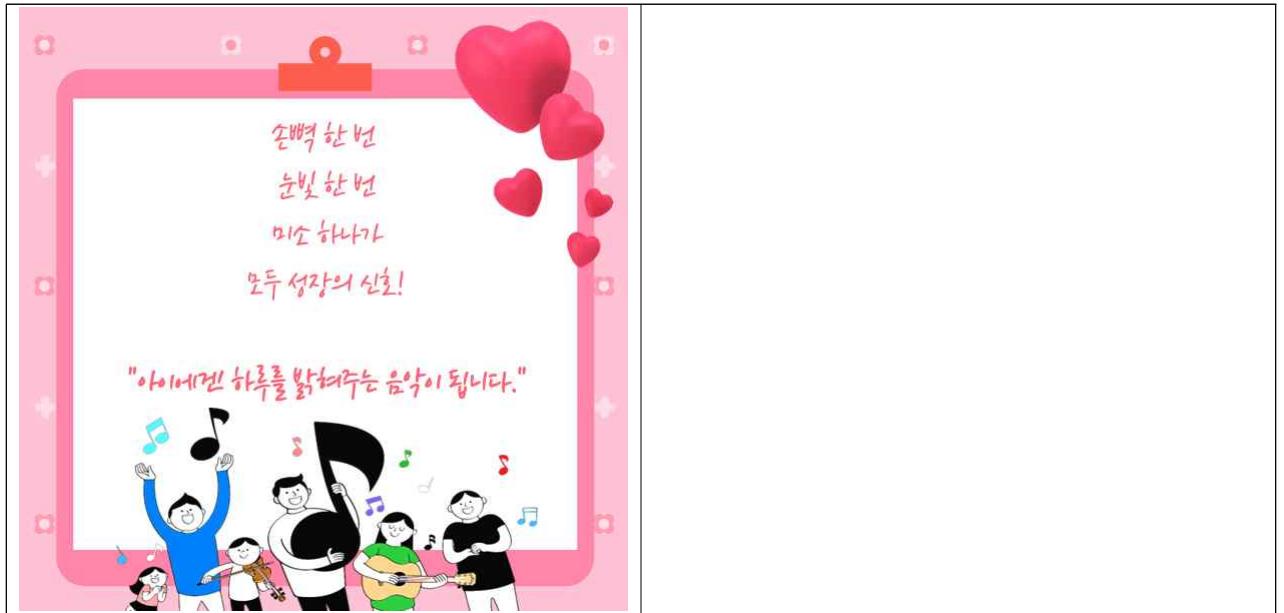
찾으면 박수치며 크게 칭찬해 주세요!

추천소리: 자연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파도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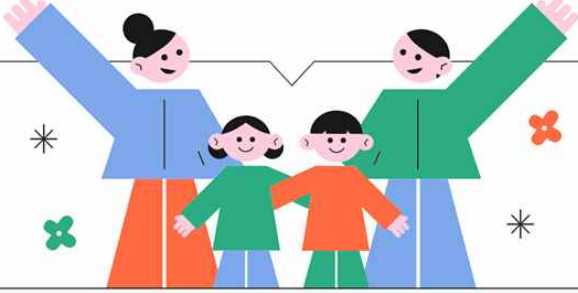
기차소리 (칙칙폭폭 소리 놀이 확장 가능)

동물소리 (고양이, 강아지, 새소리)

Tip: “어디서 들렸지?” “오른쪽? 왼쪽?” 질문을 함께 던져서 언어적 추론과 주의 이동 훈련까지 가능해요!



2. 언어재활 보호자교육 자료

언어모델링을 통한 소통법 	적합한 언어모델 낱말의 선택 아동: 와, <u>저</u>거 멋있다. 부모: 그래, 저 <u>로봇</u> 진짜 멋있다. 문법적인 구조 아동: 동생이<u>가</u> 오줌을 <u>쌌</u>다요. 부모: 동생이 오줌을 <u>쌌어요</u>? , 엄마가 치울게요. 발음 아동: <u>찌</u>어, <u>찌</u>어, 나 <u>따</u>가 <u>찌</u>어. 부모: <u>사</u>과 <u>싫</u>어? 그럼 바나나 줄까? 
적합하지 않은 언어모델 낱말의 선택 아동: 와, <u>저</u>거 멋있다. 부모: 그래, <u>저</u>거 멋있구나. 문법적인 구조 아동: 동생이<u>가</u> 오줌을 <u>쌌</u>다요. 부모: <u>동생이</u>가 <u>쌌</u>다요? 엄마가 치울게요. 발음 아동: <u>찌</u>어, <u>찌</u>어, 나 <u>따</u>가 <u>찌</u>어. 부모: <u>찌</u>어? <u>따</u>가 <u>찌</u>어? 그럼 바나나 줄까? 	적합한 언어모델 수준 아동: 언니가 때렸어. 아파 , 언니 나빠! 부모: 언니가 때려서 아프다구! 저런 사이 좋게 놀아야지 관심 (로봇을 보며) 아동: 와, <u>저</u>거 멋있다. 부모: 그래, 저 <u>로봇</u> 진짜 멋있다. 

적합하지 않은 언어모델

수준

아동: 언니가 때렸어. 아파, 언니 나빠!

부모: 언니가 때리기 전에 네가 먼저 뭘 잘못 했나
생각해봐. 그리고 언니하고 동생은 사이좋게 지내
야 한다고 엄마가 말했었지?

관심

(로봇을 보며)

아동: 와, 저거 멋있다.

부모: 여기가 백화점이다. 알았지?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를 사용한 대화

(그림책을 보며)

부모: 새집이 어디에 있지?

아동: 나무에.

부모: 새집이 나무 어디에 있니?

아동:

부모: 땅 위에?

아동: 나무 위에.

부모: 맞아. 나무 위에야. 그러면 아기 새가 가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아동: 아기 새는 떨어져.

부모: 맞아. 아기 새는 날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왜 아기 새는 날지 못할까?

엄마 새는 날 수 있는데.

아동: 새는 날아다니는데.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를 사용한 대화

위 대화의 목적

1. 장소를 나타내는 낱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2. 틀린 답을 제시하여 바른 선택을 유도한다.
3.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원인을 찾아내도록 유도한다.



주제 유지하기의 대화 예

아동: 산타할아버지가 언제 와?

부모: 크리스마스 날 오시지.

아동: (옆에 있는 물건을 지적하며) 이거 뭐야? -) (**주제 이탈**)

부모: 음, 수첩이네. 그런데 산타할아버지 본적 있니? -) (**주제유지**)

아동: 음

부모: 어디서?

아동: 유치원에서

부모: 그렇구나. 어떤 옷 입었지?

아동: 빨간 옷, 나도 빨간 옷 사줘.

부모: 다음에. 산타할아버지는 착한 어린이한테 선물을 가져다 주신데.

-) (**주제확장**)

아동: 진짜? 나 선물 받을래

부모: 그러면 먼저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지. -) (**주제확장**)

주제 유지하기의 대화 예

아동: 어떻게?

부모: 동생 때리지 말기

아동: 알았어, 이제 안 때릴게

주제 유지하기는 대화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잘 유지시키고, 대화의 진행에 필요한 새로운 주제를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유연하게 도입하는 기술입니다.

주제의 유지와 도입이 능숙하지 못한 아동에게는 대화 과정에서 부모가 적절히 개입하여 아동의 대화방향을 원래의 주제로 돌리거나 적절한 순간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 늘푸른동산 사업소개 및 운영방침



팀 명	늘푸른동산
일 시	2025년 2월 19일
담 당	김 은 숙
장 소	그루터기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25년도 늘푸른동산 사업 소개 및 운영 방침

1.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내용

1) 프로그램 이용기간 : 5년

2)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30~17:00까지 진행

3) 신규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인천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동아리활동 「작은 모임, 큰 변화」	▶ 시기 : 주 2회 ▶ 대상 : 늘푸른동산 이용인 16명 ▶ 내용 : ①트레킹동아리-지역내 명소 트레킹 및 등산 ②뷰티동아리-개인위생교육 및 본인꾸미기교육 ③사진동아리-카메라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사진촬영 ④볼링동아리-강사의 진행으로 기초 볼링활동 및 기술교육	-
걸어서 인천속으로		▶ 시기 : 년 4회 ▶ 대상 : 늘푸른동산 이용인 16명 ▶ 내용 : 우리동네 탐방사업(만수동 지역 동네탐방)	
이용인과 봉사자와의 테이트		▶ 시기 : 년 2회 ▶ 대상 : 늘푸른동산 이용인 4명 ▶ 내용 : 이용인과 봉사자와의 일대일 자유활동	

4) 2025년도 사업

■ 상반기 사업일정

구분		사업내용
1월	12월30일~ 1월 10일	이용인 동계방학
	13일	늘푸른동산 2025년도 프로그램 시작
2월	6일	상반기 팀스터디
	19일	1차 보호자 교육 및 모임
	28일	이용인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
	월중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그룹 활동(동아리활동) “작은 모임, 큰 변화”」 시작
3월	7일	1차 비만도 측정
	11일	자원봉사자 상반기 간담회
	20일	환경견학활동
4월	7일	보호자 힐링나들이
	25일	지역사회 축제참여활동
5월	10일	비루고개축제
	23일	환경캠페인, 2차 보호자 교육 및 모임
6월	9~13일	상반기 이용인 및 보호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13일	이용인 체지방 측정
	19~20일 26~27일	전직원 워크숍 1,2조

■ 연간 사업내용

사업 분야	사업명	세부프로그램
늘푸른 동산 주간 이용 센터	일상생활지원	식사 및 간식지원, 위생관리지원,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
	여가 및 특별활동 지원	여가활동 지원, 소규모 활동 지원, 특별활동지원
	교육훈련 지원	성교육, 인권 및 권익옹호교육, 보건안전교육
	자기결정능력 강화지원	이용인 월회의, 지역사회자치활동, 자기결정캠프
	환경보호사업	환경교육, 환경캠페인, 환경견학활동, 환경특별활동
	위기관리 대응사업	위기관리대응상담, 종사자 위기대응 및 중대재해예방교육, 분사방역, 위기대응 매뉴얼 관련 회의 및 제작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지역사회 통합활동, 지역사회 축제참여, 걸어서 인천속으로, 키오스크 교육 및 실습
	송영서비스	이용인 내관 및 귀가지도
	이용인사례관리사업	서비스 과정평가, 이용인 상담, 종결인 상담, 사례회의
	만족도 및 욕구조사사업	상하반기 이용인 및 보호자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가족지원사업	보호자 상담, 보호자교육, 가족모임, 보호자 힐링나들이, 가족여행, 가족송년모임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이용인과 봉사자와의 데이트, 자원봉사자 관리 및 평가,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후원사업	후원 및 후원관리
	진단판정사업	초기면접 및 사회진단, 재활계획, 결과통보
	기획 및 연구개발	직원 역량강화, 서비스 평가, 실습지도
	홍보사업	온라인 홍보, 지류 홍보

3. 운영규정 중 주요내용

제 2장 서비스 제공

제 8조 (서비스 종결)

본 주간이용센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일시 또는 영구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1. 본인포기 -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포기 의사가 있을 때

2. 강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이용인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대상자의 장애, 도전적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이용인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무단으로 연속 2회 이상 결석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

3. 일시종결

(1) 정신질환적 증후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나, 일정기간의 치료로서 증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2) 이용자의 장애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타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그 위협이나 지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무단으로 서비스에 연 5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4) 건강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5) 일시종결은 서비스 담당자가 결정하며,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한다.

단, 일시종결은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화재)가 있는 경우 1개월로 국한하며 1개월이 지날경우 자동종결 된다.

4. 이용료 및 환불기준

제13조 (이용료와 식대)	
(1)	이용료는 130,000원이며, 선불을 원칙으로 당월 10일까지 입금토록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세대의 경우 이용료는 감면 50%)
(2)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이용료 미납시에는 서비스를 종결하도록 한다.
(3)	식사비의 경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가 지원됨으로 인해 복지관 식비 기준에 맞춰 별도로 복지관에 금액을 납부한다.
제14조 (환불)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을 중단할 경우 1개월 기준으로 15일 이하인 경우 환불이 가능하나 <u>15일 이상 이용시에는 환불하지 않는다.</u>

<2025년도 월 이용료 산출근거 내역>

구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여가 생활 지원 활동비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20,000원	월 1회×320,000원÷16명
	토탈공예 재료비	-	-
	요리공예 재료비	30,000원	월 2회×15,000원
	지역사회자치활동비	10,000원	월 1회×160,000원÷16명
	기타활동 교재비(보드게임, 퍼즐)	15,000원	월 1회×240,000원÷16명
	통합활동 등 차량 주유비	2,000원	월1회×30,000원÷16명
	소계	77,000원	
행사 활동비	보호자 힐링나들이	-	
	가족과의 일일여행	16,000원	연1회×200,000원÷12월
	가족송년모임	3,750원	연1회×45,000원÷12월
	자기결정캠프	1,600원	연1회×20,000원÷12월
	소계	21,350원	
생계비	간식비	20,000원	4주×80,000원÷16명
	소계	20,000원	
공공 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11,650원	
수용비		-	
	소계	11,650원	
	총계	130,000원	

발달장애인 개인별 예산제



팀 명	늘푸른동산
일 시	2025년 5월 23일
담 당	김 은 숙
장 소	그루터기 프로그램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개인별 예산제란?

■ 정의

개인별 예산제란,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삶의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제 도입입니다.

■ 핵심 요소

- * 예산은 사람 중심(person-centered)으로 배정
- * 서비스가 아닌 사람에게 예산이 주어짐
- * 자기결정권 존중, 삶의 질 향상이 목표

■ 개인별 예산제의 필요성

기존 제도	개인별 예산제
공급자 중심	이용자 중심
획일적 서비스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결정	본인과 가족의 선택권 강화

<기존 문제점>

- * 본인의 필요보다 시스템에 맞춘 서비스
- *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제한
- * 지역, 기관에 따라 격차 존재

■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1.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신청
2. 욕구조사 및 상담
: 전문 상담사가 가정 방문 또는 상담
: 본인 욕구, 현재 상황, 목표 등 파악
3.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 : 가족, 전문가,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4. 예산 책정 및 승인
 - : 서비스 계획에 따라 적정 예산 산정 및 배정
- 5. 서비스 이용
 - : 예산 내에서 원하는 기관·서비스 선택 이용
- 6. 성과 평가 및 재조정
 - : 일정 기간 후 평가 → 필요시 계획 재조정

■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서비스 내용	예산 사용 내역(예)
* 주간활동지원	주 3회, 1회당 4시간
*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월 2회, 2시간씩
* 자립생활 지원	
* 문화·여가 활동	월 1회, 2시간
* 이동지원, 돌봄 등	주 2회, 1회당 2시간

본인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역할

1. 자녀의 장기적인 삶의 계획 함께 세우기
2. 본인의 강점, 선호, 필요를 잘 파악하도록 돕기
3. 서비스 제공기관 조사 및 비교
4. 자기옹호(Self-advocacy) 훈련 지원

■ 우리 가족의 준비는?

1. 우리 아이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2.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3.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하고 있나요?

■ 더 궁금할 때는?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별 센터 운영 중)
- * 복지로(www.bokjiro.go.kr)
-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요약]

- 개인별 예산제는 ‘사람 중심’ 복지 제도
- 맞춤형 예산으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 선택
- 가족의 참여와 계획 수립이 중요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

■ 부모님이 자주 묻는 질문(FAQ)

Q1. 꼭 모든 예산을 다 써야 하나요?

→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 가능합니다.

Q2.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회수됩니다.

Q3. 예산으로 사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인증된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우리 아이는 말이 불편한데 어떻게 욕구를 파악하나요?

→ 부모님과 가까운 교사, 복지사 등 주변인의 관찰과 의견도 함께 반영합니다.

Q5. 예산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 개인의 필요도, 지역 여건,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받습니다.

Q6. 이 제도를 꼭 이용해야 하나요?

→ 선택 사항이지만, 이용하면 보다 유연하고 개인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1: “자립을 위한 첫걸음” – 23세 지적장애인 민수의 사례

[배경]

- 민수는 23세 지적장애 2급의 청년
- 고등학교 졸업 후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냄
- 부모는 자립에 대한 걱정이 많았음

[개인별 예산 활용 과정]

1. 욕구 조사 → 민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일하고 싶어 함
2. 지원 계획 수립 → 주간활동센터+ 직업훈련 병행
3. 예산 배정 → 월 약 110만 원
4. 활용 내역
 - * 주간활동센터: 주 3회, 사회성 훈련
 - * 제과제빵 직업훈련: 주 2회
 - * 여가 활동(수영): 주 1회
 - * 이동지원: 월 4회

[결과]

- 6개월 후 근로 가능 판정
- 지역 내 장애인 카페에 취업
- 본인의 일정도 스스로 관리하기 시작

◎ 사례 2: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 29세 자폐성 장애인 예진의 사례

[배경]

- 자폐성 장애 1급, 의사소통이 제한적
- 부모가 고령, 자립생활 준비 필요성 절실

[개인별 예산 활용 과정]

1. 욕구 조사 → 예진은 익숙한 환경을 원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선호
2. 지원 계획 수립 → 그룹홈 입주 + 일상생활 훈련 중심
3. 예산 배정 → 월 약 150만 원
4. 활용 내역
 - * 그룹홈 생활비 및 활동 지원
 - * 요리·청소·금전관리 훈련
 - * 미술치료(감정 표현 도움)
 - * 주말 여가활동 프로그램

[결과]

- 부모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가능
- 본인의 방을 꾸미고, 마트에서 장도 봄
- 스트레스 감소, 안정감 향상

◎ 사례 3: “특기를 살려 사회에 나가기” - 20세 발달장애 청년 수현의 사례

[배경]

- 수현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발달장애 청년
- 진학보다는 진로 개척을 희망

[개인별 예산 활용 과정]

1. 욕구 조사 → 미술 분야에 관심, 표현력이 뛰어남
2. 지원 계획 수립 → 미술교육 + 전시 경험
3. 예산 배정 → 월 약 120만 원
4. 활용 내역
 - * 장애인 미술 교실 등록
 - * 작품 포트폴리오 제작 비용
 - * 지역 갤러리와 전시 협업
 - * 교통·보조 지원

[결과]

- 지역 공공기관 벽화 프로젝트 참여
- 작품 판매 경험
- ‘작가’라는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

각 사례는 예산의 유연한 활용, 개인 맞춤형 계획 수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처럼 자녀의 강점과 욕구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예산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025년 열린일터 사업 및 운영지침 교육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25년 1월 9일 (목)
장 소	대면 및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2025년 열린일터 연간 사업 일정

- 시무식 : 1월 9일(강당)
- 보호자회의 : 1/9, 4/3, 8/14, 11/6
- 비루고개축제 : 5월 10일(토)
- 야유회 : 5월, 9월
- 여름휴가 : 8월 4일~8일
- 여행 : 10월
-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의날 행사 참석 : 10월중(날짜 미정)
- 남동송년예술제 : 12월 10일
- 열린일터 송년회 : 12월
- 종무식 : 12월 26일

II. 2025년 일일 시간표

오 전	10시 00분 ~ 11시 00분	프로그램 및 작업(근로시간)
	11시 00분 ~ 11시 20분	쉬는시간
	11시 20분 ~ 12시 20분	프로그램 및 작업(근로시간)
오 후	12시 20분 ~ 13시 20분	점심시간
	13시 20분 ~ 14시 1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4시 10분 ~ 14시 30분	쉬는 시간
	14시 30분 ~ 15시 1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5시 10분 ~ 15시 20분	쉬는 시간
	15시 20분 ~ 16시 0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6시 00분 ~ 16시 10분	쉬는 시간
	16시 10분 ~ 16시 5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6시 50분 ~ 17시 00분	청소 및 정리

III. 2025년 근로자 및 훈련생 명단

근로자	훈련생
강웅혁, 권구원, 김정우, 노동성 방지원, 손정희, 윤준형, 이현석 이형석, 이해민 장아영, 정지훈 진명호, 최지윤, 황지선 (15명)	고아연, 김현아, 김훈섭, 박승주 민상훈, 송예진, 심명진, 양현수 양찬영, 엄혜정, 유정임, 이기홍 장서진, 정재준, 주하나, 최준홍 (16명)

IV. 2025년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담당자	횟수	참여자	비고
자치회의	근로자	김은총	연5회	근로자	자치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설 운영에 반영
	훈련생	김원진	연4회	훈련생	
지역사회 적응훈련	근로자	윤성호	연7회	근로자	소그룹 5회 전체 2회
	훈련생	김원진	연7회	훈련생	
인권교육	근로자	금민희	연7회	근로자	
	훈련생		연4회	훈련생	
성교육		이보경	연4회	이용인 전체	
안전교육		윤성호	연8회	이용인 전체	
환경교육		김원진	연2회	이용인 전체	
자판기 관리훈련		김은총	주1회	이기홍 / 주하나	본관 1층 자판기 관리
운동활동		김은총 김원진	주1회	이용인 전체	1) 요가·스트레칭 - 매주 목요일 - 훈련생 13:30~14:10 - 근로자 14:20~15:00 - 남동구체육회 연계
야유회		금민희	연2회	이용인 전체	육구 조사 후 실시
여행		류수진	연1회	이용인 전체	육구 조사 후 실시
특별활동		- 송년예술제 참석 - 기타 체험활동 등			

V. 근로자 급여 및 훈련수당

1. 근로자 급여

- 1일 2시간 근로(최저임금 적용제외 /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의 날, 동계 및 하계휴가, 개인 휴가 5일은 유급
- 여행 등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함.

2. 훈련수당 : 월 50,000원(80% 미만 출근은 일할계산)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 매월 10만원
- 소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한 지 1개월 이상 경과자
- 주당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훈련장애인
- 월 훈련일 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제도를 받지 않는 자
(한국장애인개발원 훈련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4. 복지일자리사업 참여하는 훈련생은 일자리사업 참여 6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열린일터 훈련수당에서 공제

-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당 2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배움수당 미지급

5. 한국장애인개발원 훈련생(6년까지 가능)

- 고아연, 심명진, 양현수, 엄혜정, 장서진, 최준홍(6명)
- 매월 1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 80% 이상 출근 시 전액 지급이나 15일 이상의 출근일수가 되지 않는 달은 일할계산, 80% 미만 출근 시 미지급

VI. 보호고용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근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는 ‘훈련생’이라 칭한다.[개정 2024.1.1.]

제3조(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보호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 보호고용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근로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정 제2장에 의거해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되어 근로계약이 된 자

제 2 장 근로자 선정 및 계약

제5조(근로자 선정) 근로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근로자 선정은 ‘근로자 선정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인 중 ‘근로자 선정평가’를 4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 단, 시설을 재이용하는 경우는 2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1.1]
3. 매 연말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차기 년도 근로자를 선정한다. 근로자의 최소 인원은 10명으로 한다.[개정 2018.10.1][개정 2022.1.1]

제6조(근로자 선정평가) ‘근로자 선정평가’는 본 시설을 3개월 이상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개정 2020.1.1] 단, 시설을 재이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1.1]

제7조(근로계약) 근로자로 선정된 이용인과 시설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

제8조(재활프로그램)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훈련 등[개정 2021.4.1]
 -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 능력 향상훈련, 위기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제9조(취업)[신설 2020.1.1]

1.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면접 및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출근으로 인정한다.
1. 외부기관과 연계된 지원고용으로 현장훈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경우 훈련 기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3. 근로자가 외부 업체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과의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종결한다. 단, 취업자가 업체와의 고용을 해지하고, 시설 재이용을 원하면 재접수하여 훈련생으로 입소할 수 있다.[개정 2021.4.1][개정 2024.1.1]

제 4 장 복 무

제10조(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일시)

1. 근무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하고, 근로시간은 근로자에 따라 1일 2시간 또는 3시간으로 한다.[개정 2015.1.1][개정 2017.1.1][개정 2021.4.1][개정 2022.1.1]
3. 휴게 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2조(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시간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개정 2021.4.1]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시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개정 2017.1.1][개정 2021.4.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2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1][개정 2018.1.1][개정 2021.4.1][개정 2023.1.1]
4.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5. 이용 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 기관 이용을 위한 상담 및 현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출근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5.1.1][개정 2020.1.1][개정 2021.4.1]

제13조(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3조의 1(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4조(임시휴무) 다음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근무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제15조(휴가) 연차휴가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2021.4.1]

1.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월

간 개근 시 그다음 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연차 유급휴가는 신청에 의해 1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3.1.1]
5. 연차 유급휴가는 열린일터에서 정한 휴가기간을 적극 활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또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그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열린일터 귀책사유로 인한 연차 유급휴가 소멸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3.1.1]
7.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름, 겨울 정기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신설 2023.1.1]

제15조의 1(유급휴일) 시설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본조신설 2021.4.1]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5조의 2(휴가원 및 허가) [본조신설 2021.4.1]

1.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이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설장은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는 업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개정 2018.1.1]
3. 배우자 출산 : 1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시행 2013.2.2) [개정 2013.1.1][개정 2014.1.1][개정 2022.1.1]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 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제17조(병가)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 [개정 2023.1.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질병 또는 감염병(보균자)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 이외 및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일이 부족할 때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감기, 몸살 등 단순 질환은 연가로 사용하며, 1호와 2호의 사유로 병가 사용 시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5. 근로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삭제 2024.1.1]

제18조(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

1. 공무에 관하여 기관에 소환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검진을 요청받을 때[신설 2022.1.1]
6.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 5 장 임 금

제19조(임금 지급기준 및 방법)

1. 근로자는 월 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5.1.1]
3. 임금은 서류상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4. 근로자가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단,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공

- 제할 수 있다.[신설 2014.1.1][개정 2017.1.1]
5. 시설은 매출금 및 법인전입금으로 근로자에게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개정 2018.1.1]

제 6 장 종 결

제20조(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개정 2021.4.1]

1. 근로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종결 의사가 있을 때[개정 2021.4.1]
2.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21.4.1]
3. 강제 종결
 - 1)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2.1.1]
 - 2) 근로자의 장애 및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타 이용인 및 직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주거나 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개정 2022.1.1][개정 2024.1.1]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하였을 때
4. 계약종결

‘근로자 선정평가’결과 근로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지역사회 내 업체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개정 2020.1.1]
5. 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한다.[신설 2023.1.1.] 단, 본인 및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신설 2025.1.1]

제21조(재이용)

1. 근로자가 종결한 후 재이용을 원하면 재접수하여 재접수상담과 직업재활계획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훈련생으로 입소한다. 단, 종결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판정을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0.1.1.][개정 2024.1.1][개정 2025.1.1]
2. 강제종결 이후 재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강제종결 사유에 대한 사후조치 및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확인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1.1]
3.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 기관 전이를 위해 종결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용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한다.[신설 2024.1.1]
4. 근로자가 종결 후 1년이 경과하여 재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1.1]

제 7 장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제22조(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자의 개시, 종결 상황을 최소 2주 내에 근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근로자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보호자 회의

제24조(보호자 회의)[신설 2013.1.1][개정 2024.1.1]

1. 보호고용 근로자의 보호자는 보호자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VII.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작업활동프로그램생의 훈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차 보호고용 등으로 전이되어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는 ‘훈련생’이라 칭한다.[개정 2024.1.1]

제3조(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에게 적용되며,
2.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훈련생 정의)

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사정 및 직업재활계획회의 결과 신규이용이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개정 2016.1.1][개정 2024.1.1]
2. ‘근로자 선정평가’ 결과 작업활동프로그램 대상으로 결정되어 훈련이 계약된 자

제 2 장 서비스 과정

제5조(훈련생 선정 및 과정)

1. 훈련생 선정을 위한 이용인 모집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 결원 시 접수된 순서대로 진단한다.
2. 영역별 사정 후 직업재활계획회의를 실시하여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평가 기간은 일주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개정 2024.1.1]
3. 타 기관의 동일한 직업평가(2년 이내)를 통해 의뢰된 경우, 현장평가를 통해 이용을 결정한다.[개정 2016.1.1][개정 2018.1.1][개정 2024.1.1]

제6조(결격사유) [삭제 2024.1.1]

제7조(훈련계약) 훈련생으로 입소가 확정된 훈련생과 시설장은 훈련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서 훈련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1년 중 입소자의 경우에는 입소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일로 한다.

제8조(구비서류) 열린일터 훈련생으로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계약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이용인의 권리 1부
4. [삭제 2024.1.1]
5. 복지카드 사본 1부
6. 건강진단서 1부
7. 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요구하는 서류

제9조(훈련 기간) 3년간 훈련생으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훈련 후 평가를 통해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훈련생에 한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근로자로 전환 시 훈련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개정 2019.1.1]

제10조(훈련내용 및 훈련비)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1.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장차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0시간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다.[개정 2019.1.1]
 - 1)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2)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에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3) 작업훈련 : 작업 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4)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5)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6)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7)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
2. 훈련비
 - 1) 매월 정액의 훈련비는 없으나, 훈련내용에 따라 실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중식비는 매월 5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수당 지급)

1. 훈련생은 월1회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훈련수당은 훈련계약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80% 미만 출근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1][개정 2024.1.1]
3. 훈련생이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훈련수당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단,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신설 2014.1.1][개정 2017.1.1]
4. 시설은 6개월 이상 이용한 훈련생에게 매출금 및 법인전입금으로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개정 2018.1.1][개정 2019.1.1]

제12조(취업)[신설 2020.1.1]

1. 훈련생이 취업을 위해 면접 및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출근으로 인정한다.
2. 외부기관과 연계된 지원고용으로 현장훈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경우 훈련기간 동안 시설 내 훈련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3. 훈련생이 외부 업체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과의 훈련계약은 해지되고, 종결한다. 단, 취업자가 업체와의 고용을 해지하고, 시설 재이용을 원하면 재접수하여 훈련생으로 입소할 수 있다.[개정 2021.4.1][개정 2024.1.1]

제 3 장 복 무

제13조(훈련생의 책임) 훈련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훈련생은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일 및 훈련시간)

1. 훈련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개정 2015.1.1][개정 2017.1.1][개정 2021.4.1]
3. 휴게 시간은 훈련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5조(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훈련생이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
[개정 2021.4.1]
2. 조퇴라 함은 훈련생이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개정 2015.1.1][개정 2017. 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6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8.1.1][개정 2021.4.1]
단,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출근으로 인정한다.
4. [삭제 2021.4.1]
5.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6.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기관 이용을 위한 상담 및 현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 단, 종결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현장평가 기간은 회당 최대 2주로 하고, 3회까지 인정한다.[신설 2015.1.1][개정 2020.1.1]

제16조(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6조의 1(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7조(임시휴무) 다음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훈련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 직원교육으로 인해 훈련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5.1.1]

제18조(휴가)

1. 본 시설은 여름과 겨울에 정기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시기와 휴가 기간은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
2. 본 시설은 1년에 5일의 휴가를 주고, 출근으로 인정한다. 단,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신설 2017.1.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6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2017.1.1][개정

2018.1.1][개정 2021.4.1]

제19조(특별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개정 2018.1.1]
3. 배우자 출산 : 1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시행 2013.2.2) [개정 2013.1.1][개정 2014.1.1][개정 2022.1.1]

4. 졸업식 : 본인의 졸업식 참석 (1일)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부모 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제20조(병가) 훈련생은 다음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 [개정 2023.1.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질병 또는 감염병(보균자)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 이외 및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일이 부족할 때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감기, 몸살 등 단순 질환은 연가로 사용하며, 1호와 2호의 사유로 병가사용 시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5. 훈련생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삭제 2024.1.1]

제21조(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

1. 공무에 관하여 기관에 소환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검진을 요청받을 때[신설 2022.1.1]
6.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22조(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의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개정 2021.4.1]

1. 훈련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종결 의사가 있을 때[개정 2021.4.1]
2. 훈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개정 2021.4.1]
3.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21.4.1]
4. 강제 종결
 - 1)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2.1.1]
 - 2) 훈련생의 장애 및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타 이용인 및 직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주거나 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개정 2022.1.1][개정 2024.1.1]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하였을 때
5. 계약종결[신설 2020.1.1]

지역사회 내 업체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6. 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한다.[신설 2023.1.1] 단, 본인 및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신설 2025.1.1]

제23조(훈련개시, 종결, 통보) 훈련 담당자는 훈련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 내에 훈련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대기자

제24조(대기자) 서비스 담당자의 서비스 이용 의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가 유예된 대상을 ‘대기자’로 칭한다.

1. 현 서비스 대상자가 정원에 달했을 때
2. 특수학교 및 학급에 재학 중일 경우 (단, 고3에 한해 대기할 수 있다.)
3. [삭제2021.4.1]

제25조(재이용)

1. 훈련생이 종결한 후 재이용을 원하면 재접수하여 재접수상담과 직업재활계획회의를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훈련생으로 입소한다. 단, 종결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판정을 통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0.1.1.][개정 2024.1.1][개정 2025.1.1]
2. 강제종결 이후 재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강제종결 사유에 대한 사후조치 및 시설이용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확인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1.1]
3. 이용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 기관 전이를 위해 종결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용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한다.[신설 2024.1.1]
4. 훈련생이 종결 후 1년이 경과하여 재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1.1]

제 5 장 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 등)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훈련생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보호자 회의

제27조(보호자 회의)[신설 2013.1.1][개정 2024.1.1]

1. 작업활동프로그램 훈련생의 보호자는 보호자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향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장애인복지 정책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25년 12월 29일(월)
장 소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2026년 장애인복지 정책

1. 장애인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와 지속적인 소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3만 3,546명(2025년 12월) → 3만 5,846명(2026년)

2.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대상자 수 : 13만 3천명 → 14만명
- 서비스 단가 : 1만 6,620원 → 1만 7,270원
- 서비스 대상과 지원 수준이 함께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한 통합돌봄 전문수당 인상
- 월 15만원(2025년) → 월 20만원(2026년)
- 보호자의 부재나 위기 상황에 대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 2개 시·도 시범사업(2025년) → 전국 시행(2027년~) 이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

4. 장애 인정 범위 확대

-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장애 유형 15개 → 16개 유형
- 책상장애 신규 포함(2026년)

5.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

-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 통합돌봄 대상 : 65세 이상 장애인,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 통합돌봄을 통해 퇴원 후 돌봄 연계, 방문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이 강화되어 장애인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6.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소득과 여건으로 인해 치료와 일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생활 안전망도 함께 강화
-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한 탈락 문제 개선

- 생계급여 인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 확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II. 장애인 개인예산제

1.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개념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정한 서비스 대신, 개인에게 예산을 배정하여 본인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성하도록 하는 제도
-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지 당사자 중심으로 결정
-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면 시행

2. 개인예산제의 필요성

- 기존 복지서비스의 한계
 - 제공기관 중심의 서비스
 - 선택권의 제한
 - 개인욕구보다 제도 기준이 우선
 - 서비스 시간·내용이 획일적
- 개인예산제의 철학
 - 자기결정
 - 개별화
 - 지역사회 통합
 - 삶 중심 지원

3. 개인예산제 핵심 원칙

- 삶 중심 : 치료가 아닌 생활·일상·삶의 질 중심
- 선택 가능 : 기관이 아니라 장애인 본인이 선택
- 조합 가능 : 여러 서비스를 개인별로 조합
- 조정 가능 : 삶의 변화에 따라 중간 변경 가능

4. 개인예산제 서비스 선택권 강화

-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 내에서 직접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활동·돌봄지원
 - 활동지원인 이용(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 돌봄, 일시적 보호
 - 가족 돌봄 보완 서비스(일부 시범지역)
- 이동·외출 지원
 -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 외출 동행 지원
 - 사회참여·문화활동을 위한 이동비(시범지역 한정)
- 보조기기·보완도구
 - 장애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
 - 일상생활 보완용 물품
 - 의사소통·학습·작업 보조 도구
- 재활·역량 강화
 - 재활 프로그램
 - 직업훈련, 취업 준비 지원
 - 사회기술·자립생활 훈련
- 문화·여가·사회참여(제한적 허용)
 - 체육·문화활동 참여비
 - 지역사회 모임·프로그램 이용료
 - 자조 모임, 권익옹호 활동

5.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장점

- 맞춤형 복지 실현 : 장애 유형, 생활환경, 가족 상황을 고려한 설계 가능
- 자립생활 강화 :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경험이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짐
- 서비스 만족도 상승 : 불필요한 서비스 감소, 실질적 필요 충족

2025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등록번호 2026-05호

- 발행일 : 2026년 2월
- 발행인 : 손 동 훈
- 편집인 : 장 선 영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